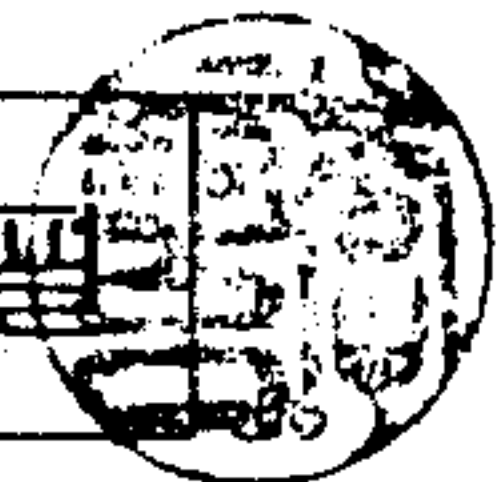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50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년 11월 27 일 (제 79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8. 11. 27.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1998. 11. 24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제안이유 :

‘98. 9. 26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 로 하고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

3. 근거법령 :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4. 사전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첨부 : 1.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위 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보은군 농촌지도소내에 둔다 	제2조 【위 치】 농업기술센터
제5조 【관리책임】 농촌지도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